

의정소식



이 천 시 의 회 Icheon City Council





c o n t e n t s

41

차 례

발 간 사 2 의회연혁 3 역대 의장단 4 의원총람 6 의회조직 7 의회구성 8

의회운영 현황

- 의정활동 현황
-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
- 의안별 안건처리 현황
-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회기별 본회의 운영현황 사진으로 안내하는 의정활동

의정활동 일지 49 지방의회가 하는 일 54 의원 주소록 55 의회 안내 56

발 간 사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의회의원 모두는 지난해 7월 8일 후반기 의 회 구성이후 1년동안 의원들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상적인 시민의 생활주변부터 개선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정진해 왔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겨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1년 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꽃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이와 연필로 하는 탁상 행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단계 에서 이제는 거울앞에 서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존재 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시민 앞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19만 시민 여러분!

이번에 발간되는 의정소식지는 제2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구성이후 제41회 임시회 부터 제48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정활동 전반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정소식지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성원에 보 답하는데 일조를 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9만 이천시 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2001년 10월 이천시의회의장 강기 및

의회연혁

• 1991년 3월 26일 제1대 이천군의회 의원선거(의원13명)

•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이천군의회 개원

• 1994년 3월 4일 설성면 선거구 보궐선거(의원1명)

• 1995년 6월 27일 제2대 이천군의회 의원선거(의원14명)

• 1995년 7월 1일 제2대 이천군의회 개원

○ 경기도 파주시등 5개도 ·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로 이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원 14명이 시의원으로 신분 승계

• 1996년 3월 1일 제1대 이천시의회 개원

• 1997년 3월 20일 모가면 선거구 보궐선거(의원1명)

• 1997년 9월 1일 제1대 이천시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

• 1998년 6월 4일 제2대 이천시의회 의원선거(의원13명)

0

0

• 1998년 7월 8일 제2대 이천시의회 제1기 개원

• 2000년 7월 8일 제2대 이천시의회 제2기 개원

역 대 의 장 단

이 천 군 의 회

❖ 제1대 1기 ('91. 4. 15 ~ '93. 4. 14)

• 의 장: 유광수 • 부의장 : 박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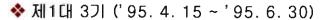
• 의 장: 박완구

• 부의장 : 심흥택

• 의회운영 위원장 : 임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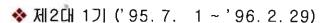
• 내무위원장 : 김문식

• 산업위원장 : 국희영



•의 장: 유광수

• 부의장 : 박선기



• 의 장 : 국희영

• 부의장: 박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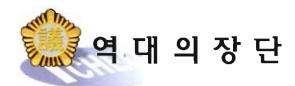
• 의회운영 위원장 : 이종철

• 내무위원장 : 박병진

• 산업위원장 : 이상복







이 천 시 의 회

❖ 제1대 1기 ('96.3. 1~'97.8.31)

• 의 장 : 최운학

• 부의장 : 이무영

• 의회운영 위원장: 강신원

• 내무위원장 :박용선

• 산업위원장 :이종철

❖ 제1대 2기 ('97.9.1~'98.6.30)

• 의 장 : 심흥택

• 부의장 : 강기필

• 의회운영 위원장: 이상복

• 내무위원장 : 이종률

• 산업위원장: 강신원

❖ 제2대 1기 ('98.7. 1~'00.6.30)

• 의 장 : 이재혁

• 부의장 : 이종률

• 의회운영위원장 : 조명호

• 자치행정위원장 : 유준열

• 산업건설위원장 : 박용선

❖ 제2대 2기 ('00.7. 1~'02.6.30)

• 의 장 : 강기필

• 부의장 : 원종성

• 의회운영위원장 : 서동예

• 자치행정위원장 : 고성옥

• 산업건설위원장 : 김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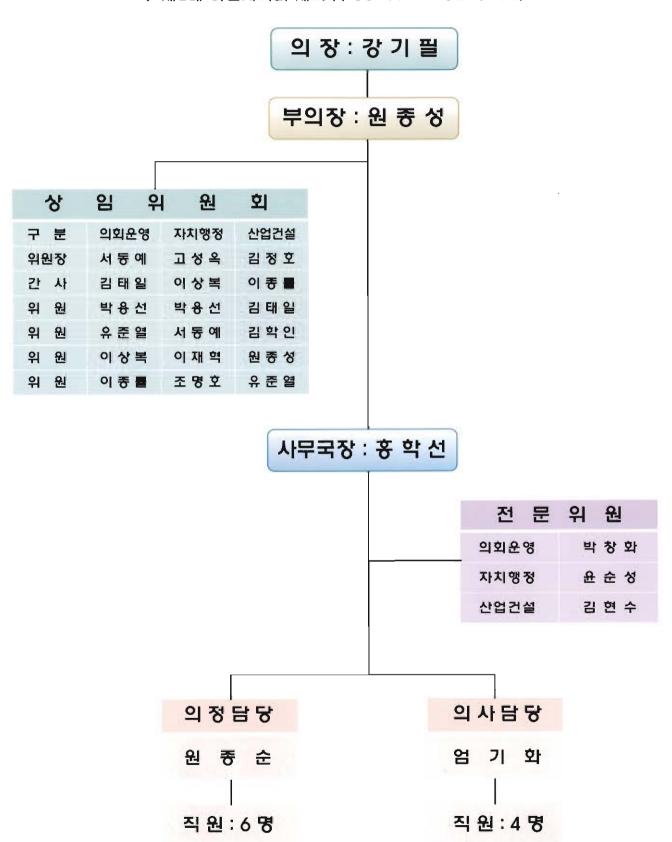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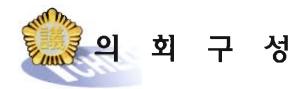
의 원 총 람





❖ 제2대 이천시의회 제2기('00, 7, 1~'02, 6, 30)





의 원 현 황

정수:13인

-읍 · 면:10인 동 :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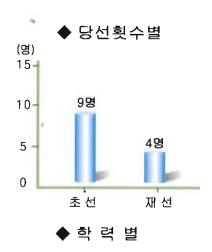
원 구 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 원 회 명	위원정수	현 원	관 할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6	6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6	6	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산업건설위원회	6	6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의 원 분 포









Icheon city council

의회운영 현황

이천시의회 제2대 후반기 원구성이후 제41회 임시회부터 제48회 제1차 정례회(2000. 7 ~ 2001. 7)까지 의회운영 결과임.

◉ 의정활동 현황

회 기 운 영	정 례 회	임 시 회
8회	2회	6회
(83일)	(30일)	(53일)

◉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

○ 총 괄

접 수	처 리
71건	128건

※ 접수 건수는 집행부와 의원 발의에 의해 공식 접수된 안건의 수치이며 처리건수는 접수건수 외에 회의진행 관련 안건까지를 포함 · 처리한 실적임

◉ 의안별 안건처리 현황 (41회 임시회 ~ 48회 제1차 정례회)

(단위 : 건)

	two technical			가 결			(211 2)
의 안	의 종류	건 수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128	125	105	20	2	1
	소 계	45	42	27	15	2	1
조 례	제 정	13	13	6	7	_	_
데 안	개 정	32	29	21	8	2	1
	폐지		_	_	_	_	_
ਜ	칙 안	_	_	_	_	_	_
동	의 안	5	5	3	2	_	_
결 의	·건의안	7	7	7	_	_	_
예	산 안	4	4	1	3	=	_
선 임	· 선 출	20	20	20	_	_	
보고	<u>.</u> · 질 문	2	2	2	-	_	-
승	인 안	4	4	4	_	_	-
청	원	_	_	_	-:	_	-
기	타 안 건	6	6	6	-	_	_
회의진]행관련안건	35	35	35	_	_	_



leheon city council

◉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조례안(규칙안)

구분	71 A		가 결		ᆸᅺ	철 회
회기명	건 수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45	42	27	15	2	1
제41회 임시회	8	8	5	3	·	-
제42회 임시회	1	_	_	_	-	1
제44회 제2차 정례회	8	8	6	2	-	_
제45회 임시회	7	5	2	3	2	
제46회 임시회	7	7	5	2	-	
제47회 임시회	4	4	2	2	_	_
제48회 제1차 정례회	10	10	7	3	_	_

○ 결의(건의안)

구분	7J 人		가 결		부 결	철 회
회기명	건 수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T 2	—————————————————————————————————————
총 계	7	7	7	_	ı	_
제41회 임시회	2	2	2	_	-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1	1	1	_	_	_
제45회 임시회	1	1	1	_	_	_
제47회 임시회	3	3	3	_	_	_

○ 예 산 안

구분	구분 가 결			ы	#1 =1	
회기명	건 수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4	4	1	3	_	-
제42회 임시회	1	1	_	1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2	2	1	1	_	_
제47회 임시회	1	1	_	1	_	_

○ 동의 안

구분	가 결 건 수				нч	#1 #1
회기명	L'T	소 계	원안동의	수정동의	부 결	철 회
총 계	5	5	3	2	_	_
제42회 임시회	1	1	_	1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1	1	1	_	-	-
제46회 임시회	2	2	1	1	_	_
제47회 임시회	1	1	1		-	-



Libeon city council

○ 보고 · 질문

구분	건 수					비건	1 1
회기명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4	4	4	-	-	_	
제41회 임시회	1	1	1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2	2	2	_	-		
제46회 임시회	1	1	1		=	_	

○ 승인안

구분	거 스		가 결		ㅂ귕	원 원
회기명	건 수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4	4	4	_	-	_
제43회 임시회	1	1	1	_	_	-
제44회 제2차 정례회	1	1	1	_	_	_
제48회 제1차 정례회	2	2	2	_	_	

○ 선임선출

구분	건 수		가 결		ㅂ겨	원 취
회기명	12 T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계	20	20	20	_		_
제41회 임시회	3	3	3	_		_
제42회 임시회	3	3	3	_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3	3	3	_		_
제45회 임시회	1	1	1	-	_	_
제46회 임시회	3	3	3	-	-	_
제47회 임시회	4	4	4	_	-	_
제48회 제1차 정례회	3	3	3	_	_	_

○ 기타안건

구분	건 수		가 결		ᆸᄁ	A H
회기명	2 7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철 회
총 계	6	6	6	_	_	_
제41회 임시회	2	2	2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2	2	2	_	_	_
제45회 임시회	1	1	1	_	_	_
제46회 임시회	1	1	1	_	-	-

○ 회의진행 관련 안건

구분	건 수	u — T	가 결	부 결	철 회	
회기명	2 T	소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千 包	실 외
총 계	35	35	35	_	_	_
제41회 임시회	5	5	5	_	_	_
제42회 임시회	5	5	5		-	_
제43회 임시회	4	4	4	_	_	_
제44회 제2차 정례회	5	5	5	_	_	-
제45회 임시회	3	3	3	_	_	_
제46회 임시회	5	5	5	_	-	_
제47회 임시회	4	4	4	_		_
제48회 제1차 정례회	4	4	4,	_	<u>1.34,</u>	-



Icheon city council

제41회 임시회

◉ 회 기: 2000. 9. 18 ~ 9. 30(13일)

◉ 안건처리현황: 11건

	처리결과
사결과 고성옥의원외4인	원안채택
JIF attended and a	61.63 = 11 = 11
0.50% - 20% - 20%	원안채택
난건의(안) 이재혁의원외12인	원안채택
정조례(안) 김정호의원외4인	원안가결
례중개정 "	"
·) 이천시장	일부수정의결
조례(안) "	원안가결
"	일부수정의결
촉진을 "	"
에관한 "	원안가결
"	"
5 H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서동예의원외12인 이재혁의원외12인 이재혁의원외4인 김정호의원외4인 " " 한) 이천시장 경조례(안) " " 등촉진을 "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 촉진율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 · 운반및재활용				
• 이천시준농림 설치에관한 <i>2</i>		· 숙박시설등	 과태료 부과금액란 중 1차 위반란을 삭제하고 2차위반을, 1차 위반으로 3차 위반을 2차 위반으로, 4차 위반 이상을 3차위반 이상으로, 1차 위반란 200을 100으로 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한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 하고 위락 : 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점함 			

◉ 특이사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집행된 시설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과 앞으로
조 사 목 적	추진되어야 할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 조사를 통한 사
	업별 공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
조 사 기 간	2000. 9. 21~9. 28(8일간)
	•시 본청 및 각 읍 · 면 · 동 사무소
	• ' 99~2000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복구계획
구기에기 티 비시	•토목 · 건축공사 추진실태 전반(5,000만원 이상)
조사대상 및 범위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추진실태 전반(현황도 포함)
	•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 2000 도자기축제 및 2001 도자기엑스포 준비상황 전반
특별위원회편성	•특별위원장 : 김 학인 의원
극말귀전외인정	• 위원수 : 의원 12인(3반)
	• 위원회 개최(4차)
특별위원회 운영	• 관련 실·국·소 현황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독일귀천의 군정	• 조사자료 검토
	•현지 방문 조사 및 확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 피해방지시설 미설치(총무과)
	•도자기형 볼라드 보수 소홀(건설과)
	•도로굴착후 복구 불량(건설과)
	• 가산~무촌간 도로 개설 공사 비관리청 시행 공사 부진(건설과)
	• 장호원 문화의 집 방음시설 불량(문화공보실, 장호원읍)
	• 상봉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실(설성면)
조 사 결 과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건설과)
	• 장호원 시내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 불량(도시과)
	• 농촌마을 자가수도 수질관리대책 미흡(상수도사업소)
	• 농촌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소홀(각 읍면 공통)
	•오성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하자 발생(율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주택융자금 지원사업 미흡(건설과)
	•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실(건설과)
	•교통체계관리(T.S.M)사업 불합리(교통행정과)
	•오천리 우수관거 정비사업 부실(마장면)
	• 안평2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실(호법면)
	• 군량3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부실(대월면)
	- COV-10-1C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내 오수분리 관거공사 부실(도시과) • 백사면 조읍2리 수해복구 부실(백사면) • 모가면 두미리 소하천 수해방지대책 미흡(모가면) • 양화천 하상정리 미흡(대월면) • 장호원 둔치 호안블럭 유실(건설과, 장호원읍) • '99~2000 소규모 수해복구비 집행 부적정(시민생활과) •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건설과, 모가면) • 제요천 개수공사(2차), 제1차 붕괴(건설과) • 공사일지 작성 및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관리 소홀(각 읍면 공통)		
• 종합운동장 입구 건널목 육교 설치 건의(도시과)	조 사 결 과	 백사면 조읍2리 수해복구 부실(백사면) 모가면 두미리 소하천 수해방지대책 미흡(모가면) 양화천 하상정리 미흡(대월면) 장호원 둔치 호안블럭 유실(건설과, 장호원읍) '99~2000 소규모 수해복구비 집행 부적정(시민생활과)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건설과, 모가면) 제요천 개수공사(2차), 제1차 붕괴(건설과) 공사일지 작성 및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관리 소홀(각 읍면 공통) 〈건의사항〉

수정의결

〈이천시지방재정투 · 융자사업심사조례(안)〉

예산편성의 기초를 위하여 이천시지방재정투 · 융자사업심사규정을 제정하여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동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투자심의회를 구성 ·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다음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는 일부수정의결을 한 것임.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해 새로이 조정 하고자 한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행정지도의 사전 절차를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조문을 폐지 또는 삭제함.

〈의약분업 시행관련 건의(안)〉

발 의 자	서동예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0년 9월 26일
발 의 이 유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이며 서로 협조해야만 뿌리내릴수 있는 선진의료 제도로써 비용증가와 불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의사·약사의 협조없이 강제로 하는 의약분업은 성공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과 장기계획 아래 다시금 충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시행 시기를 다시 결정토록강력히 촉구함.
발 의 내 용	"별첨"

의약분업 시행 유보 건의문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라는 명분아래 시행하고 있는 작금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하여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무런 도움도 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 사태 를 극히 우려하며 조속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보여준 의약분업 사태의 주요 원인은 치밀한 사전분석과 철저 한 준비 부족으로 의·약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94년 1월 7일 공포·시행되고 시행 시기가 공포후 5년 이내로 결정되어 그동안 상당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준 비 부족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 약분업 시행을 전면 재 검토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 분업이며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조 해야만 뿌 리내릴 수 있는 선진 의료 제도로써 비용 증가와 불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의 사·약사의 협조 없이 강제로 하는 의약분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과 장기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과잉 의욕만으로는 실패 확률이 높음으로 종합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 아래 현실 적인 접근법만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도 살고 국 민도 큰 불편없이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상태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의사·약사에게는 물론 국민의 높은 보험료 부담(기존의 3배)과 극심한 진료의 불편으로 날로 높아가는 국민의 원성과 폭발 직전의 저항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실 패로 이어져 현재는 임의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이 많이 들고 국민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조제하는 약이나 약사가 조제해 주는 약중 선 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환자인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꾀하고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안과 혼란 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의 분업 형태의 일본식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임의 분업식 의료개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오니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日報



lcheon aty council

〈2000년 농업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안)〉

발 의 자	서동예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0년 9월 26일
발 의 이 유	 2000년도 세재 개편안과 농업예산 삭감 조치로 인한 전국 450만 농가 부담의 증가(약 7,293억원)에 따른 동 조치의 철회 요구 안보 주권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가격 보장, 소득보장, 재해보상 등 보호정책의 건실화 요구
발 의 내 용	"별점"

2000년 농업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문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농업 경시 정책으로 농민 들은 가격폭락, 농가부채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년에는 태풍 피해마져 극심하여 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지난 4일 농업세제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내 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은 추석을 바로 앞둔 지난 8일 농 업예산이 감축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여 농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허탈감 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4.13총선 선거 공 약을 통해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 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의 농업부문 3대 핵심 세제 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 시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자가 있는데 이중 농ㆍ 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 시한이 3년 연장되는데 그치고 감면율은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되어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1,443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농민들 의 재산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 득세, 비과세는 제외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연간 5.850억원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반면 농림예산 은 0.9% 감소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논농업직불제, 재해보험 제도는 물론 한·중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출하 조절자금 마저 전액 삭 감됨으로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가 불가피 해 졌습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안보주권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농업은 특성 상 자연조건, 가격결정 등 모든 면에서 공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에 세계 각국에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른 각종 보호정책, 즉, 가격보장, 소득보장, 재해보 상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으로 유지 ·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를 염두해 둔다면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에서도 천명된 바 있듯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을 이루고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업세제 감면은 확충되어야 하며 농업예산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현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IMF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 들이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경제 의 근간인 농업의 쇠락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과 농업예산의 삭감 조치를 철회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42회 임시회

● 회 기: 2000. 10. 27 ~ 11. 4(9일)

◉ 안건처리현황: 2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처리결과
동 의	•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장	일부수정의결
승 인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	일부수정의결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2000년도제3 계획변경(안)	회공유재	산관리	 "구"사회복지관 등 시내에 소재한 소규모 시유 잡종 재산을 처분 이천시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추가로 매입ㆍ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여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한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이천쌀 성가보호 및 홍보를위한 "구"등기소 건물 2층을 전시ㆍ판매 목적으로 무상사용 수익 허가 함.

● 특이사항(일부수정의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괄

(단위 : 천원)

당초예산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229,602,984	229,602,984	448,050

※ 감액예산 : 예비비로 충당

○회계별분류

(단위: 천원)

회 계 명	예산 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합 계	229,602,984	229,602,984	448,050
일 반 회 계	178,131,492	178,131,492	48,050
특별회계	51,471,492	51,471,492	400,000



제43회 임시회

회 기: 2000. 11. 16 ~ 11. 21(6일)

◉ 안건처리현황: 1건

구분		루 의	안	건	제 안 자	처리결과
승 인	• 2000년도행정사무감	사계획시	허승인의	건	_	원안승인

◉ 특이사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감 사 목 적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감 사 기 간	2000. 12. 5 ~ 12. 11(7일간)
감 사 대 상	시 실·국·소 및 각 읍·면·동,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환경사업소)
감사대상기간	1999. 11. 1 ~ 2000. 10. 31
감사반편성	상임위원회별
감 사 요 령	사무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답 변, 현장 확인
감 사 자 료	(총 367건) •대민봉사실 - 16건 •기획감사실 - 25건 •문화공보실 - 22건 •총무국 - 58건(총무과 20, 시민생활과 15, 세무회계과 23) •산업복지국 - 86건(지역경제과 14, 사회복지과 24, 환경보호과 11 청소과 12, 농정과 15, 축산과 10) •건설도시국 - 78건(건설과 26, 도시과 17, 교통행정과 17, 지적과 8 주택과 10) •보건소 - 20건 •농업기술센터 - 13건 •상수도사업소 - 17건 •산림공원관리사업소 - 13건 •환경사업소 - 4건 •의회사무국 - 4건 •읍 ·면 ·동 - 8건 •공통 - 3건

제44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2000. 12. 4 ~ 12. 29(26일)

◉ 안건처리현황: 14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처 리 결 과
승 인	•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천시장	일부수정의결
"	•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승인
"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동의
동 의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의결
채 택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원안채택
제 정	•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의결
개 정	• 이천시시청및읍 · 면 · 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이천시통 · 리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	•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채 택	•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김태일의원외12인	원안채택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시청및읍·면·동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 중리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위치인 중리동 187-1로 변경하는 것 •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농지세」는 조세 성격과 맞지 않아
•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 • 자동차와 관련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함. • 소득할 주민세 세율 :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계속되는 세율로 정함(세율 10%) • 국민의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수수료, 사용료의
조례중개정조례 - -	현실화 추진에 의거 - 수수료 요율 인상(수수료 137개 종목중 40개 종목) (원가보상율 70% 미만 종목) - 수수료 항목 삭제(34개 종목) - 수수료 항목 신설(3개 종목 4건)



Icheon city council

● 특이사항(일부수정의결)

〈2001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괄

(단위 : 천원)

당초예산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183,002,179	183,002,179	1,757,042

※ 감액예산 : 예비비로 충당

○회계별분류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 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82(18)4124	
합 계	183,002,179	183,002,179	1,757,042
일 반 회 계	140,238,802	140,238,802	1,717,042
특별회계	42,763,377	42,763,377	40,000

〈시정질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감 사 목 적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 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00. 12. 5 ~ 12. 11(7일간)					
감사대상				, 시 산하 민간위탁기		
감사대상기간	1999. 11. 1 ~ 20					
감사반편성	상임위원회별					
감사요령	사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			. 현황보고 청취, 감사	사항에 대한	
감 사 내용	총 367건					
	〈총 41건 : 자치행정위원회 21, 산업건설위원회 20>					
	관련부서명 총 계		계 41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비고
	ㅎ 대민봉사실	-	41	36	5	
	기획감사실		2	2		
감사결과	건국무건물 문화공보실			3		
	총 무 국		14	13	1	
	산업복지국		7	7		
	건설도시국		15	11	4	
	보 건 소		_	_	_	
	농업기술센터		_	_	_	
) 751 ml	•기금관리 소홀 기획감사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					
시정 및				관품 보관(조작작품)	관리 규정 미준수	
개선사항	문화공보실			조사에 따른 관리 소흡		
	工私으工員			배부 방법 개선		

		•도예 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사전 조사 소홀
	총 무 과	· 중리동 청사 개·보수사업 미흡
		• 새마을 회관 관리 소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 감독 소홀
		•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징수 소홀
		· 골프장 검사등 지도 감독 소홀
	시민생활과	•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추진 소홀
	1 - 0 - 1	•꽃길 가꾸기 사업 부실
		•토지 매수 및 용지 보상 부적정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소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
	세무회계과	•세외수입 징수 소홀 및 회계관리 미흡
시정 및	T CH 건 레 크	•도자기축제 홍보 마켓팅 용역의 부실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배분 부적절
개선사항	원건보조기	•일반폐기물 소각장 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 소홀
	환경보호과	•소각장 건설 국·도비 지원금 관리 소홀
	농 청 과	•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미흡
	축 산 과	• 톱밥구입사업 및 비가림 시설사업 지원업무 소홀
	환경사업소	• 위생처리장 처리수 강구책 소홀
		• 수남~표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U측구 시공 부실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건 설 과	•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 체계 부적정
		•동아건설 부도에 다른 대책 소홀
		• 설성면 대산천 하천등급 부적정
	도 시 과	•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교통행정과	• T · S · M(교통체계관리)사업 부적정
	주 택 과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소홀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급수용량 여유분 활용 미흡
		•공동주택 수도급수 계량기 검침 소홀 및 수도요금 부과 부적정
	산림공원관리사업소	•복하천 시민공원 수해복구 부진
	총 무 과	• 호법면 보건지소 신축시 회의실 건립 건의
건 의 사 항	-1 LI -1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 · 포장(편도 4차선)건의
	건 설 과	• 교량(대죽 2교, 대산교) 재가설 건의
	1	•세천 정비사업 건의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부의 농업장려 정책에서 기인된 만성적인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푹락으로 그 어느때보다 도 농가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현실에서 마을단위별로 미풍양속에 의해 소폭으로 자행되어 온 소 도축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상당기간 회복 세에 접어들 때까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존치시키는 일부 수정의 결을 한 것임.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직, 증시 불안정, 고유가 등 서민경제에 미치 는 가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의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고자 가정용 · 영업용 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39.4%로 재조정하는 일부 수정의결을 한 것임.



Icheon city council

〈지역언론왜곡보도에 따른 성명서〉

발 의 자	김태일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0년 12월 28일
발 의 이 유	 새해 예산과 관련된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왜곡 보도한 지역 및 지방신문사(이천신문, 이천저널, 중부일보)에 강력히 경고 문제시 된 보도내용을 명확히 바로 잡고자 함.
발 의 내 용	"별점"

지역언론 왜곡 보도에 다른 성명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1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이천신문(2000년 12월 23일보도), 이천저널(2000년12월23일보도), 중부일보(2000년 12월 27일 보도)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여 이천시의회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스럽게 해 드린 지역 및 지방언론에 대하여 지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되고 있는 주요 삭감사항에 대하여 내역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천신문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총 삭감 규모는 17억 5 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회가 추진하는 환경 관련 사업 지원비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삭감한 사실이 없으며

예총시지부 위탁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지원비 1천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지나치게 적은 예산으로 행사 개최의 현실성이 없어 삭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복지 증진 예산 8백만원 중 4백만원 삭감에 대한 사항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아닌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판공비)로서 해당과에 편성 요구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며,

의원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예산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일본, 중국 등 자매결연도시 의원 방문에 대한 답방을 위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된 여비로서 해외 연수와는 무관하며 기관 독립의 특성상 의회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확인치 않고 언론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왜곡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유 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언론의 사회공익적 측면을 감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제45회 임시회

기: 2001. 2. 19 ~ 2. 24(6일) 호

◉ 안건처리현황: 8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처리결과
개 정	•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일부수정의결
"	•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y,
"	• 이천시노인 · 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	"	원안의결
	개정조례(안)		
제 정	•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부 결
개 정	•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	원안의결
	개정조례(안)		
"	•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제 정	•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	부 결
채 택	•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	김정호의원외12인	원안채택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노인 · 아동을위한다목적 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을 "시내"로 하는 용어의 불명확한 것을 "이천시에"로 개정하는 것		
•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종전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중 퇴소 조건에 있어 불명확하던 관련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특이사항(일부 수정의결)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대민봉사실의 기구명칭 변경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혼선을 가중 시킬뿐더러 지금도 계속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하 지 못하므로 기존 대민봉사실의 행정기구 명칭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 고자 하는 일부 수정의결을 한 것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위한 융자금 신청시 융자금 대부 신청에 관한 연대 보증인 제도의 새로운 규정 강화는 현실성에 비추어 보증능력의 한계에 부디쳐 수혜자의 융 자금 신청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연대보증 자격범위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일부 수정의결을 한 것임.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실직증가 등 주민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가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인상폭을 당초 40% 에서 평균 30.1%로 하향 재조정하는 일부 수정의결을 한 것임.

⊙ 특이사항(부결)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이 조례안은 기존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난개발 방지의 차원에서 도시계획법령에서 통합규정하게 되면서 도시계획법령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의 내용을 보면 동 조례안의 경우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어 동 조항에 대하여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요청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시 ·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도시계획조례 에 의한 위임이 없는 경우의 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관보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고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부결된 것임.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

발 의 자	김정호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1년 2월 13일
발 의 이 유	정부의 복구비용지원 대상 농가의 과대한 제한과 복구비용 지원 대상 항목의 비현실성으로 피해 농가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작용되어 대책 마련을 호소에 옴에 따른 것임.
발 의 내 용	"별점"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및 부가가치세 감면 건의

근간 우루과이라운드나 한국, 칠레간의 FTA 협정 등 수입개방화 시대하 에서 정부는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투입 등 농어촌 구조사업에 대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상당수의 농 가가 전업 농가화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농가들의 부채도 증가하여 농 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가의 부채 규모는 총 138만 2천 농가에 25조 6.153억 7 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1,853만 5천원이며 경기도는 15만 농가에 2조 7,265억 5천만원으로써 호당 평균 1,817만 7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천시 9,595만 농가의 부채 규모 또한 총 2,400여억원으로 호당 평균 2,500만원의 부채를 안 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부채 규모보다 35%가 높다는 점에서 이천시 농가의 어두운 경제 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7일 전국적으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강 타한 폭설로 인해 1,664농가와 공장 공공시설 등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 어 이로 인한 전체의 피해 발생 규모는 399억 9.460만 5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의 농작물, 비닐 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 156억 7,934만 7천원이며, 복구비는 413억 7,321만 4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 170억 5,795만 6천원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행 정부가 내놓은 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으로는 많은 부 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농가로부터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승적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면 일반농가의 고추 건조용 비닐하우스나 농자 재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조나 창고용도 의 비닐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과수원의 방조망과 덕시설을 포 함해 상업적 목적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농업재해로 불인정 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 또한 축산물의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에만 지원이 되 고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은 피해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가 뜩이나 부족한 복구비용에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구입시 소요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더욱이 농가에 큰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금번 설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구비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피해농가가 복구시 자부 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증가됨으로써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농가가 전국 및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상이하여야 하나 동일한 복구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복구자재 품절 및 자재비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복구를 곤란하게 합니다.

셋째, 기존 부채가 과중한 현실에서 설해 피해 보상의 대부분이 융자로 충당하여 부채 증가의 악순환를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피해 농가가 영세농으로 자부담 능력이 대부분 전무한 실정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10%로의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가는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행 북구비 지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지원 대상을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확대하여 주고,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또한 확대 지원해 줄것과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어 실의에 찬 농심을 위로하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는 포용내지 유화농업 정책을 과감히 전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제46회 임시회

◉ 회 기: 2001. 4. 12 ~ 4. 24(13일)

◉ 안건처리현황: 10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원리경제
	T 4 2 2	세신사	처 리 결 과
채 택	•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개 정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	이종률의원외4인	원안가결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정	•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장	"
개 정	•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제 정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
동 의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일부수정동의
제 정	•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	"
	조례(안)		
"	•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	"
동 의	•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	원안동의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한 것임.
•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민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 · 운용하고자 함.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페기물처리시설촉진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직·간접적인 영향권안의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기능토록 함.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가능.

● 톡이사항(일부 수정의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 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감 면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칙시 행 기준을 1개 항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별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 수 정의결을 한 것임.

〈2001년도 당면사업 추진실태조사 결과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면 사업별 사업장 현지조사를
조 사 목 적	통한 추진상황과 상업별 공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
	에 대하여 시정조치 내지 개선을 촉구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조 사 기 간	2001. 4. 16~4. 21(6일간)
조사대상	본청, 각 읍면동 사무소
	• 2000년도 이월(명시, 사고)사업 전반
	• 2000~2001 수해 및 설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및 복구 계획
	• 교통체계 개선(T·S·M)사업(교통섬)
조 사 범 위	• 생활폐기물 학술 용역 추진사항
	• 전원주택 부지(관고동 사음 2통) 허가 사항
	• 폐차장(대월면 구시 · 도지리) 허가사항
	• 구제역 예방 대책 추진사항
	• ' 98~ 2000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특별위원회편성	위원장(유 준열 의원), 간사(이 재혁 의원), 3개반 의원 12명
	• 위원회 개최 : 4회
	• 관련 실국소별 현황 설명 청취 및 질의 · 답변
특별위원회운영	• 조사자료 검토
	• 현지 방문 조사 및 확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마장면 관4리 장자울 세천공사 소홀(건설과)
- 마장면 이평리 옥수암 앞 뜰(새보) 농업용 배수로 토사 매몰(건설과)
- 호법면 단천2리 시도 4호선 도로변 배수로 미흡(건설과)
- 신둔면(지방 2급 하천)제방 붕괴(건설과)
- 금산이천(소하천)공사 미 실시(건설과)
- 응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구간내 교량가설 불량(건설과)
- 비닐하우스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미흡(농정과)
- 본죽리 뜰 수로관 붕괴(건설과)
- 설성면 대산천 제방공사 미실시(건설과)
- •단월천 보수공사 소홀(건설과)
-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피해 지원 미흡(농정과)
- 설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 지연(농정과)
- 모전3리 양돈단지 진입구 교량 침하(건설과)
- 호법면 매지기보 농업용수로 매몰(건설과)
- 호법면 주박리~주미리간 도로변 배수로 토사 퇴적(건설과)
- 2000년도 취약지 정비공사 부실(도시과)
- T · S · M(교통체계관리)사업 부적정(교통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비용 원가계산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 부실 (폐기물관리과)
- •도자기형 볼라드 관리 · 보수 미흡(건설과)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의 부적정성(건설과)
- 보도턱 정비공사 부실(건설과)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폐기물관리과)
-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운영 부적정(폐기물관리과)
- 무촌리 소하천 정비공사 부적정(건설과)
- 회억~장암간 도로 확 · 포장공사 미흡(건설과)
-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미조치(건설과)
- 이천향토민속박물관 설계 부적정(문화공보실)
- •도시환경사업(중앙로 차없는거리 조성 공사) 추진 소홀(도시과)
-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 용역 사업추진 소홀(도시과)
-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하자 발생(상수도사업소)
- •지석묘 관리 부실(문화공보실)

조 사 결 과



제47회 임시회

회 기: 2001. 5. 28 ~ 6. 5(9일)

◉ 안건처리현황: 10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처리결과
제 정	•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이천시장	일부수정의결
	•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	"	원안동의
개 정	• 이천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정	•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승 인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	일부수정의결
	경정예산(안)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명선임
체 택	• 국도42호선확 · 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이재력의원외12인	원안채택
"	•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강기필의원외12인	"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이재혁의원의12인	"

● 특이사항(일부수정의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괄 (단위 : 천원)

당초예산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231,360,899	231,360,899	1,197,185

※ 감액예산 : 예비비로 충당

○회계별분류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 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합 계	231,360,899	231,360,899	1,197,185
일 반 회 계	169,729,293	169,729,293	1,197,185
특 별 회 계	61,631,606	61,631,606	_

〈한해대책보고·청취〉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이용자는 이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 허가사항 변경시는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
•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처리 •이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기준 삭제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삭제
•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규정 삭제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 폐지 -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대상사업자에대한 홍보 · 계도 지도 규정 삭제 - 보관용기 설치 및 보관방법에 대한 지도 규정 삭제
•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 자료제출, 조사, 검사 규정 삭제 •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과 단체를 발굴 시상.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

발 의 자	이재혁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1년 5월 22일
발 의 이 유	「2001세계도자기EXPO」를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표출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발 의 내 용	"별천"

국도42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건의

21세기 굴뚝없는 문화·관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각 나라마다 고유 전통과 특색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방문화 5대 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가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전세계 80여개국에서 500만명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이유치한 우리 이천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문화축제가 그 어느 축제보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도자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주요시설 설치와 주변환경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여러해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42호선(내사~이천간)확·포장 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기간동안 본 도로의 활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은 경기도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써 공사지연의 주원인을 예산 부족 사유를 들고 있으나 도자기엑스포 개최 이전에 조기 개통이 안될 경우 극심한 교통혼란이 우려 되어 국제적 행사의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42호선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주행사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사거리 구간은 시가지를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써 국도도로구역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확·포장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본 도로의 교통량은 평소에도 포화상태에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자기엑스포 행사 진입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 통혼잡이 우려 되므로 우리 19만 이천시민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 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내사~이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오천교차로에서 유산 교차로 구간은 도자기엑스포 이전에 조기 개통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기존 국도 42호선을 재포장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국도42호선이 유산교차로에서 이천사거리 구간(3.4km)을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하여 20m 폭의 도로로 개설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주행사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행사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각종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경기 남부,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 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

발 의 자	강기필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1년 5월 22일
발 의 이 유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채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만 남겨 놓고 있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수도권정비계 획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재도약 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발 의 내 용	"별점"

수도권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문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 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 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 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 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사업등 과다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 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 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 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 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이상 제한기준을 30만㎡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째 미만에서 30만째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부지면적(105,067㎡)에 대한 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7,380㎡만 완료 되었으며, 2단계 47,687㎡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 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 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며 부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m'이상 제한기준을 10만 m'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때미만에서 100만때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 조성사업을 현행 3만때이상 제한기준을 10만때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때미만에서 50만때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713,000㎡)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개발면적(도시계획법상 유원지 및 상업지역임)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0.000㎡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 로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시 관내 초.중.고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 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 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연면적 3.000㎡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 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연수 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 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 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대량 실업시대와 IMF조기졸업을 위해 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경기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거의〉

발 의 자	이재혁 의원외 12인
발 의 일 시	2001년 5월 22일
140 SE 12 10	근간의 비정상적인 집회 및 시위로부터 공공의 업무를 방해 받음은 물론 국민의
발 의 이 유	인격권인 프라이버시권마저 침해를 받음에 따라 국민보호의 차원과 공공의 안녕
	질서 차원에서 동법의 건설적인 개정을 촉구함.
발 의 내 용	"별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라 규정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집회 또는 결사가 이를 통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 전달하려는 인간 본래의 자연적 행동양식이고,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며, 소수의 집단이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공권력 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소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향을 돌이켜 볼 때에 그 기본권행사률 위한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목적은 건전한 의사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목적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당초 집회신고시의 인원 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단지 2~3명만이 공공기관의 주위에서 확성기나, 북, 징, 꽹가리 등 을 사용하여 장기간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 론 인근 주거지역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 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더불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의 평온 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기본권 중에 서도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아서는 아니될 기본권입 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취지를 인식하여 지난 1999년 5월24일 개정된 이른바 집시법은 제8 조 제3항에서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 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 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국민의 건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실효성 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에서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장소와 기간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여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동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의 보 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의 집회 및 시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를들면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의 소음기준)

셋째.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한 통고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당해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1차 정례회

회 기: 2001. 7.5 ~ 7.12(8일)

◉ 안건처리현황: 12건

구분	부 의 안 건	제 안 자	처리결과	
개 정	•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동예의원외5인	원안가결	
승 인	•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천시장	원안승인	
"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 "		
개 정	•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이천시통 · 리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i>II</i> .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	"	
"	•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 정	•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조명호의원외5인	일부수정의결	
개 정	•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원안가결	
"	•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일부수정의결	
제 정	•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	"	

⊙ 특이사항(일부 수정의결 사항)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도자기의 기술 발전을 꾀하고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며 전통도자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의적인 제정 목적과는 달리 운영의 투명성 등 자칫 희석될 우려가 있는 문제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명장선정 대상분야를 일부 축소하여 조정하고 사업체간 위화감 조성 및 도자 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명장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삭제함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한 주차 수입원의 세출 사용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의 설치·관리와 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신설은 적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이 대두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신설 규정을 삭제한 것임.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자 위원회의 심의 · 의결 기능을 일부 축소하여 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원을 격상시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임.

○ 참고사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축산진흥의 예비비 지출은 2000년 3월 해외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긴급 방역하기 위하여 소독약품 등 소요액으로 사용하였고 예산운영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 하였으나 2단계 구조 조정 추진으로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승인함.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별분류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 요구액	승인(수정)예산액	감 액
합 계	302,337,119	190,295,267	112,041,852
일 반 회 계	255,615,420	169,565,275	86,050,145
특 별 회 계	46,721,698	20,729,991	25,991,706

● 주요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주 요 내 용
•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3일에서 12월 1일로
조례중개정조례안	변경함.
• 이천시통 · 리 · 반설치조례	• 기존 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어 생활권이 달라
중개정조례안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대민 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리반을 분리(신설)조정 하려는 것임.
•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토지(임야)대장에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관인을
	사용하고자 함.
•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가 '96. 3. 1. 책정된 이후 인상
개정조례안	되지 않아 도내 타ㆍ시군의 반입수수료보다 저렴하여
	현행 7,4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Activities

사진으로 안내하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례회는 1년에 2회 열리며, 1차 정례회는 7월 5일, 2차 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됩니다.
- ·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로 소집합니다.
- ·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회의

-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상임위원회

- ·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 청원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 ㆍ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 안건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 ·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

•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서동예,간 사:김태일

위 원: 박용선, 유준열, 이상복, 이종률



⊙ 자치행정위원회

직무와 소관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고성옥,간 사:이상복

위 원: 박용선, 서동예, 이재혁, 조명호

A ctivities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

-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김정호,간 사:이종률

위 원: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특별위원회

- ·예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중요사안 등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해서 운영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결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살림살이 계획표입니다.
-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합니다.
- · 결산은 한해동안 사업을 집행한 결과보고서이며,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

❖ 조례의 제정/개정

- ·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로 제(개)정됩니다.
-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Activities

◉ 시정질문/답변

- ·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집행상의 제반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회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입니다.
- ·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 · 질문내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시정시책의 개선 · 보완 등 문제 제시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 · 시정질문은 하나의 안건으로 질문하기 24시간 전까지 답변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원/진정서 처리

- ㆍ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며,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 진정은 지방의원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원과 다릅니다.



◉ 현장방문

- ·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충실한 대변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 ·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수집된 각종 정보를 의정활동에 소중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결의/건의문

·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각종 사회 이슈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A ctivities



열린의회 ▶

◉ 공청회/간담회

- 현대민주주의는 물리적 시 공간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뽑은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칫 특정집단에 의해 주민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도록 각종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청회와 간담회를 확대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열린의회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항시 개방하고 활용하며 언제든지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외 각급 학교의 견학 및 실습장소로 널리 이용되도록 합니다.

● 컴퓨터 활용/홈페이지 활성화

-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과거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정보획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인터넷 활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회를 만날 수 있는 정보 창구로서 시민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 세미나 개최

ㆍ지역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의원들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식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00	7. 1(11:00) 7. 11(10:00) 7. 12(10:00) 7. 12(11:00) 7. 13(10:00) 7. 13(11:00) 7. 13(11:00) 7. 15(14:00) 7. 19(15:00) 7. 23(09:00) 8. 15(10:00) 8. 15(11:00) 8. 16(10:30) 8. 16(10:30) 8. 16(10:30) 8. 17(15:00) 8. 17(15:00) 8. 17(15:00) 8. 17(15:00) 8. 24(10:00) 8. 24(10:00) 8. 24(11:00) 8. 24(11:00) 8. 24(11:00) 8. 25(10:30) 8. 25(10:30) 8. 26(10:00) 8. 27(10:00) 8. 27(10:00) 8. 27(10:00) 8. 27(10:00) 9. 2(11:00) 9. 2(11:00) 9. 2(11:00) 9. 2(11:00) 9. 2(11:00) 9. 2(11:00) 9. 2(10:00)	동실실실총장장관군당실장관고관관국)리실내원비시비관산교장산실홅()관사)원리관앞대전,)장장실관도관실관장장장실층관관관실변총포회 회18 육 강의동 회무면 지공발원갈육 학동 의트면회백공1육인의 회 회 현 및 회 요청 원 회예리회강협 영위회 운관평관협교 독회신장 수산불유불육 학동 의트면회백공1육인의 회 현 및 회 요청 원 회예리회강협 일위회위정 회 회축초민장민기의요면 원 보숯솔숯체강중교봉증자(호마집육천체나부성종봉)의 회 현 및 회 주성운 원 회예리회강협 및 및 회 최축초민장민기의요면 원 보숯솔숯체강중교봉증자(호마집육천의의 회 현 및 회 주성운 원 회예리회강협 및 인공시 위협민문삼센 신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 국립의료보험관리공단 이천지사 출범 현판식 · 간사선임,조례안 6건 처리 · 간사선임,조례안 6건 처리 · 기상반기 의정활동에 판한 세미나 · [제40회 제1차 정례회, 폐화 제1회 이천시 농업경영인 가족제육대회 · 제13회 이천사 농업경영인 가족제육대회 · 제13회 이천아카테미,요영 · 한국농가 경영건설팅 교육 · 도가초등학교 종등분회 체육대회 · 제15회 마찬민인 체육대회 · 제18회 조국순례대행진 출정식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에머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에머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에머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이어의 전통가마본지피기 행사 ·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업 '개막식(~9.3<18일간>) - 급강산 세미나 설명회 · 장호원 평역상수도 통수식 · 쌀 전업농 단함 체육대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와의 오찬 간담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와의 오찬 간담회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9차 원례회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의 오찬 간담회 · 제3회 경기도 도지사기 검도대회 · 급강산 세미나(~29) · 제6회 모가면민체육대회 · 제16회 도암조교 총공문회 · 제12회 이전시민한마음감기대회 · 이천발전기회위원회회의 · 전15의 도암조교 총공문회 · 제11회 경기도자가 생활제육대회 · 청대전자·동조합 이 취임식 및 대의원 대회 ·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조각가 초청만찬회 · 출산기리 마음회관 준공식 · 출산기리 마음회관 준공식 · 출산기리 마음회관 준공식 · 출산기리 마음회관 준공식 · 출산기리 마음 기관 준공식 · 중산기리 등집 가장 기계회 · 제13학 경기도자사기 생활제육대회 · 천구교수원교 구이 중성 자사제판 및 사무실 기공식 · 이천시 감나무 테권도선수 전용제육관 개관 · 배사면 용합기 등 존아보험 · 전기도시 소시업생인 관련주인 불편사항심태조사 · 제1회 이천가라를 대회 · 제3차주요사업빛인생관련주인 불편사항심태조사 · 제1회 의 전라리를 제3대 기계회 · 제3차주요사업빛인생관련주인 불편사항심태조사 · 전병구원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조사 · 제3회 경기도장소년인속에 등지나 문자사 · 제3회 경기도장소년인수에 등 전기당문조사 · 제3회 경기도장소년인수에 등지나 문자사 · 제3회 경기도장소년인수에 등지나 문자사 · 제3회 경기도장소년인수에 등집 전상문조사 · 제3회 경기단자 등집 및 주화발표회 · 여성문화대학 개상석 · 저역 기급하면 바가회 및 수화발표회 · 수해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조사 · 제3기 인구라리를 제3 및 수화발표회 · 여성문화대학 개상석 · 저역 기급하면 바가회 및 수화발표회 · 수행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조사 · 제3기 인구라리를 제3 및 수화발표회 · 경기도지 소리를 장임기로 제40차 월레회의 · 2000년 기승보급자원 중화 환경 기상 시설 중화 환경 기상 시설 중 기상 인상 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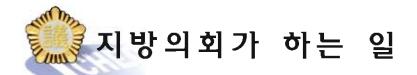
9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1(10:00) 0. 9(18:30) 0. 10(10:30) 0. 10(18:00) 0. 11(10:00) 0. 11(10:00) 0. 13(10:00) 0. 13(10:00) 0. 14(13:00) 0. 14(13:00) 0. 15(09:30) 0. 16(10:00) 0. 16(11:00) 0. 17(10:00) 0. 17(11:00) 0. 18(18:00) 0. 20(11:00) 0. 21(15:00) 0. 24(10:00) 0. 24(10:00) 0. 24(10:00) 0. 26(10:00) 0. 26(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8(10:00) 0. 27(10:00) 0. 28(10:00) 0. 28(10:00) 0. 27(10:00) 0. 28(10:00) 0. 21(11:00) 0. 3(10:00) 0. 3(10:00) 0. 3(10:00) 0. 11(11:00) 0. 7(11:00) 0. 7(11:00) 0. 11(11:00)	교다산장장장() 관장회관관산실총장내관관도회()) 실텔정실고장장실당산장장홍실장총장관실실실교도사총장장() 실장장합관관산 동 기포 본 경(대회 협시회 의 2 동 장회성협단텔장과교의급 동회 스 등 당 중 경(대회 협시회 의 2 동 장회성협단텔장과교의급 동회 나동 당 등 관한 사용 기계 전 성회협운 일 (마부피학기을의 동회성 나동 연원 관 공주 변합 반설 예협민마을 보 등 사용 기계 전 성회협운 일 (마부피학기을의 동회성 나용 원인 원인 관 공주 변합 반설 예협민마을 보 등 사용 기계 전 경기 의 2 단 기계 전 경기 의 2 단 기계 전 경기 의 2 단 기계 전 경기 전 2 단 기계 전 경기 의 경기 기계 전 2 단 기계	· 제20회 장호현급민제육대회 - 우정의밥 행사(중국경택진시) 임본신략정.유전정) -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 - 제10회 설분아가씨 선발대회 - 제17회 경로체육대회 - 가마골 사람들(연극) - 제31회 건국체육대회 참가(~18일까지) - 항공부대창설 제50주년 기념식 - 학생예능발표회 - 제21회 경기백일장 - 제2회 이권시남부관 초.중.고백일장 및 사생대회 - 사진작품전(~17까지) - 무용경연대회 - 제7회 이권시남부관 초.중.고백일장 및 사생대회 - 사라드움이전시지회장 이.취임식 - 일회용품사용철건을 위한 토론회 - 자매결연도시안동시)간 체육대회 - 제4회 노인의 날 경축행사 - 경기도지사초청 간담회 - 청복 서예전 - 경기도시소청 간담회 - 청복 서예전 - 경기도시산원회의 장협의회 제41차 원례회의 - 제2회 이권국악제 - 제1회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 백정자자부장관 공로패 수여식(이재혁의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회장 이.취임식 - 2000 단원가족 한마음 축제 - [한국지방정치의 과제와 지방의회의 역합,세미나 - 제3회 사랑의 중도리 운동(불우이웃돌기) - 대제(2회 임시회 개최 (10.27~11.4(9일건)) - 제1회 이천시장기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 - 일골바자회 평안의 집) - 이천시민 한마음 권기대회 - 이천시테니스템회장 테니스대회 - 새마읍지도자 한마음 해극대회 - 이천시테니스템회장 테니스대회 - 새마읍지도자 한마음 해극대회 - 이천시테니스템회장 테니스대회 - 세대의회 임시회 과기결정 등 - 설부시원 등 점인 등 제(-8일까지) - 제2회 인치회 회기결정 등 - 설부시원 등 전신 축제(-8일까지) - 제2회 인시회 개회 - 경기동부권 (의회장사 개청식 - 경기동부권 (의회장사 개청식 - 경기동부권 (의제기회 등 대청의 제16차회의 - 제1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회서 작정 - 경기동부권 (인재기) - 화성군 행사 및 의회청사 개청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원시회 및 개최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과성로 권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교육 전 원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교육 전 원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교육 전 원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동부권 (인재기) - 교육 전 원사 및 의회장사 가정식 - 경기도사관 의회의 작업 원리 회의 - 제1차 2000년도행정사무 관차계회서 작정 - 대체3회 보지 등 대화 등 만든만마담당리기대회 - 대체3회 보지 등 대체 등 만든만마담당리기대회 - 대체3회 보지 당당하는 당관 전 원리 및 의회의 등 인상 제품 중시 기념식 - 경기도사관 의외 의장 대접 보다 된 제명의 - 조건도사관 의외 의장의 의제 16차회의 - 제1차 2000년로 행정사 구당사 기회의 제16차회의 - 제1차 2000년로 행정사 구당사 기회의 제16차회의 - 제1차 2000년로 행정사 무상사 기회의 전 전성 - 건대회 대화 대학자 관관 전체의 제1차 2000년로 행정사 및 의회 제2 전 전 전 제 및 의회 제 2 전 전 전 제 및 의회의 전 2 전 전 제 및 의 교 전 전 전 제 및 의 교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및 의 교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전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된 전 전 제 전 제

의 정 활 동 일 지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01	12. 2(16:00) 12. 5(10:00) 12. 5(18:00) 12. 5(19:30) 12. 6(10:00) 12. 7(10:00) 12. 8(10:00) 12. 8(10:00) 12. 8(10:00) 12. 13(10:00) 12. 13(10:00) 12. 13(14:30) 12. 13(19:00) 12. 14(10:00) 12. 14(11:00) 12. 15(11:30) 12. 20(10:00) 12. 21(17:30) 12. 21(18:00) 12. 21(18:00) 12. 22(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2. 27(10:00) 13. 3(11:00) 1. 3(11:00) 1. 16(14:00) 1. 16(16:00) 1. 12(15:00) 1. 13(11:00) 1. 15(10:00) 1. 22(10:00) 1. 22(10:00) 1. 21(10:00) 1. 22(10:00) 1. 21(10:00) 1. 22(10:00) 1. 21(10:00) 1. 21(10:00) 2. 2(11:00) 2. 2(11:00) 2. 2(11:00) 2. 2(11:00) 2. 2(11:00) 2. 16(11:00) 2. 16(11:00) 2. 17(11:00) 2. 2(11:00)	관실폐관장드당소소방실실당당장당장당장관동장실외실폐관실장관실실당장실청장실는당회관협텔당관실실청휼실장실층 회의 육 현건 이 회의강 3 의로강 강 길 회 의 회의회부 서회로 시화된신 의회축 회회 회구 당회 회 오오. 보기 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 2000 축구인의 밤 행정사무갑사(위원회법(지2.5~12.11) 강호원기수법연합회 회장 이 취임식 중부일보사 창사 10주년 기념 음악회 제1회 이천시장기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이천시장강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이천시장강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이천시장강검 생활체육합의회장기 축구대회 이천양장여자증학교 빌더스를랩 창립1주년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사망의 일일 장갑" 제1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지2. 13~12. 19) 남해회화,생활개선회 자매접연석 · 제4회 이환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불우이웃돕기 '않을 바자회' 고리대학교 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협정 조인식 장동2리 경모당 준공식 2000년 송년 음악회 · 제3차 분회의 이 전에순청산투별위원회 군보대 위문 제16차 이천이가데미(북한식 자연요법) 2000년도 이천시연집문 기제1차 현회의 교리대학교 병원기선정질문 기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부대 위문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부대 위문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부대 의문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당한기원기업 등관식 보인하례오전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시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하례오전원의원부인 신년로 작년 등로 기회 경기도시문의 항의장협의회 제17차회의 B.B.S. 이천시자부 송.신년회 경기도시문의회의장협의회 제43차 원례회의 한국노출 이천,여주 자역지부 2001경기대의원 대회 이현관국회 제4차 정기총회 경기동부리 제계자 전기총회 경기로사 문의회의장협의회 제43차 원례회의 한국노출 이천,여주 자역지부 2001경기대의원 대회 이현관국회 제4차 정기총회 경기로부리 제계자차 등회의 제201기 기관장 조청 조찬 기도회 이현 제량건외회 제3차 총회 제21회 특하 예술제 이현지화 경기총회 새마을지 원시총회 기정등회 전시총회 기정등회 전시층회 기제당자 존형 조한 기도회 이현 제량건 201년도 주요업무보고 원취 제가되고 원회의 제가하려 환화의 제21회 특하 예술제 이현제 원시총회 기정당 조성 조찬 기본회 대대는집회 연시총회 기정당 조성 조찬 기본회 대대를지 열시용회 기정당 조성 조찬 기본회 대변 전 전체 전 기본화 기원

🧼 의 정 활 동 일 지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 0 0 1	5. 2(09:00) 5. 2(11:00) 5. 3(16:00) 5. 4(15:00) 5. 7(05:00) 5. 8(10:00) 5. 10(10:00) 5. 11(06:20) 5. 13(09:30) 5. 14(10:30) 5. 14(11:00) 5. 14(18:30) 5. 14(11:00) 5. 18(10:00) 5. 23(11:00) 5. 24(10:00) 5. 27(09:00) 5. 27(11:00) 5. 27(11:00) 5. 28(10:00) 5. 27(11:00) 5. 29(10:00) 5. 30(10:00) 6. 3(10:00) 6. 3(10:00) 6. 3(10:10) 6. 3(11:00) 6. 5(10:00) 6. 5(10:00) 6. 5(10:00) 6. 5(10:00) 6. 5(10:00) 6. 5(10:00) 6. 10(10:00) 6. 11(09:00) 6. 10(10:00) 6. 11(09:00) 6. 11(09:00) 6. 11(10:00) 6. 21(17:30) 6. 23(10:00) 6. 24(06:00) 6. 27(10:30) 6. 27(10:30) 6. 30(10:00)	장읍실실시장시텔도장당당톝실텔리트당변고교장실실실실원실장교장장장홀탑장회실실교관장울산실층관관실협페관원정산당실장 동원 의진동 호 스강강호의 호거파강강 회회회회회의동 최당 나의의 초회공 회협회박회신위 회공 다 당의동 오 의회 운천다롱테관관다층다의아관북 조의원원원공의동초의의 동대 나의의 초회공 회험회박회신위 회공 대회 문 설호 청국합 란 라회회한 3 한 한 회주천하회위위위위 회운 문희회설 보리원회 월민회 3 원민민3 후라인봉 회3 설명 청국합 라이 상후 립청호라인봉 회3 설명 함께 1 등 1 등 1 등 1 등 1 등 1 등 1 등 1 등 1 등 1	· 제46회이천시체육회장기검제6회연합등문축구대회 · 제47회 경기체선 결단식 의생업소 연업주 간담회 등작 검택진시 방문(5. 7~5, 11) - 종합운동장준공식및 제2회송민배전국대여자촉구회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5.9~5, 11) - 이천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가입22주년기념식 - 통합방위협의회 전방 시활(5.11~5, 12) - 제5회 결은배 테니스대회 - 유럽 바자회 - 제2회 삼비이는대회 결단지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경기에는





-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 ▋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

1.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권

-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당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선거권

•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대한 권한으로서 의장 ·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권

3.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자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권: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시행함
 - -행정사무조사권: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4. 동의권

- 지방자치 단체장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경우)
-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기타 법에 정해진 사항

5. 승인권

•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승낙을 부여하는 권한 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6. 청원 수리권

-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이를 호소해 오면. 이를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7. 보고 및 서류의 수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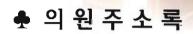
-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그밖의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결 처분 사항에 대한 보고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의 보고
 - -청원처리상황의 보고

8. 외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제시권

- 지방자치의 행정과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 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정부, 국회, 기타 기관단체)으로 건의 또는 결의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정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도 있다. 예) 도시계획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변경을 할때

9. 자율권

•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으로 의회 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및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징계, 의원의 자격 심사 등



번호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선거구
1	강 기 필 (姜基弼)	의 장	50. 8.14	장호원읍 · 리44-5	자)641-2273 011-306-2273	467-902	장호원읍
2	원 종 성 (元鍾成)	부의장	43. 10. 10	율면 산양리 364	자) 643-8232 011-787-3601	467-892	율 면
3	서 동 예 (徐東藝)	의회운영 위 원 장	40. 7. 6	모가면 소고리 542	スト) 632 - 3349 019 - 330 - 3349	467-873	모 가 면
4	고 성 옥 (高聖鈺)	자치행정 위 원 장	45. 11. 20	설성면 금당리 87	자) 641 - 6203 011-792-6203	467-881	설 성 면
5	김 정 호 (金正虎)	산업건설 위 원 장	57. 8.13	백사면 모전리 406-8	자) 635 - 3594 011-277-3594	467-832	백 사 면
6	이 종 등 (李鍾律)	의 원	57. 8. 29	부발읍 신하리 369-5	자)636-6127 사)635-9120 011-325-0075	467-865	부 발 읍
7	유 준 열 (劉俊烈)		37. 12. 10	신둔면 소정리 201	자) 638 – 7141 011 – 687 – 7141	467-841	신 둔 면
8	박 용 선 (朴庸善)		43. 12. 3	호법면 동산리 254-2	자)632-9594 011-724-9594	467-821	호 법 면
9	이 상 복 (李相福)		46. 2.13	마장면 덕평리101-54	자)632-2131 사)632-6530 011-264-7516	467-812	마 장 면
10	김 학 인 (金學仁)		61. 8. 9	대월면 초지2리 122	자) 636 – 0562 016 – 362 – 0562	467-853	대 월 면
11	조 명 호 (趙明鎬)		48. 3. 15	창전동 444-3	자) 635 - 3321 011 - 325 - 0865	467-807	창 전 동
12	이 재 혁 (李在赫)		37. 12. 16	중라동 233-7	자)635-3344 016-367-3712	467-800	중 리 동
13	김 태 일 (金泰日)		48. 11. 16	관고6동 226 설봉A 나/307호	자)638-3399 019-216-9911	467-707	관 고 동

♣ 임시회 및 정례회 방청 안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의 임시회, 정례회는 시민 모두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시기

• 정례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다만, 그날이 공휴일인때는 그 다음날로 함)

• 임시회 :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되며 개최 5일전에 공고됩니다.

◉ 방청방법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633-9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의회 안내

•의 장 실: 633-9990, 644-2501

• 사 무 국 장 실 : 644-2506 • 의회운영전문위원 : 644-2510 • 자치행정전문위원 : 644-25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644-2512 • 의 정 담 당 : 633-9991

•의 사 담 당:644-2521 •F A X:633-9992



